

[별표 3]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 고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체크리스트	필수제출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필수제출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필수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제출
5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	필수제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된 기술의 잔여 유효기간(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이 6개월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P, NET 등 인증서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사본 ·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품질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서 사본 - 품질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검사합격증명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인증서 사본, ·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공인시험기관의 유효 시험성적서 사본(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인증서 사본, 당초 시험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필수제출
7	최근 1년(3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8	해외 진출실적	
9	고용인원 증가 실적	
10	기술개발 투자 현황과 관련 증빙자료 일체 (별지 제3호의 4서식 참조)	
11	(삭제)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필수제출 (시스템 확인)
14	정규직 등의 신규채용 실적	
15	(삭제)	-
16	기술개발사업 참여 증빙자료 일체	
17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18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별지제1호의 17호서식)	해당시 제출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것에 한하며,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 실적, 수출실적, 고용인원 증가 실적, 기술개발 투자 실적으로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 가능
5.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 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7. 지정이후 최초 연장신청 제품은 필수적으로 '우수제품 직접생산 제조공정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27년 1회 차부터 지정받은 우수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